##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85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 : 민형배·송갑석·양경숙

김민철 • 이정문 • 김철민

이용빈 · 최종유 · 임종성

이소영 · 주철현 · 소병훈

박광온 • 홍익표 • 안규백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

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4조).

법률 제 호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18민주화운동"을 "5·18민주화운동(1980년 5월 광주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특별재심) ① 5<u>·18</u>민주화운 제4조(특별재심) ① <u>5·18민주화</u>운 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 동(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 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 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거하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 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 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 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 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 하 같다)-----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